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3. 홍지광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2025. 5. 23.

다. 상정일자: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6.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가. 제안이유

-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폭염저감조치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2조)
-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입법예고: 2025. 5. 15. ~ 5. 20. (제출된 의견 없음)
- 관련 사업
 - 사업명: 폭염 종합대책 추진
 - 사업기간: 2025.1.1.~2029.12.31
 - 총사업비: 222,400 천원 (연례반복적 사업)
 - 사업내용: 스마트그늘막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추가
 - 제2조 제5호나 목: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 대응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 조문 내용 정비
 - 제7조 제1항 제5호: "위한 냉방 용품"을 "위한 식수, 냉방 용품 등"으로 변경하여 실제 지원 항목의 다양화를 명문화함.

③ 개정내용 검토

○ 제안이유

폭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수 등의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폭염 대응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기대효과

- 폭염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명 및 건강 보호 강화.
- 조례의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 제고.

④ 타 자치구 사례



<사진 1> 인천광역시 중구

<사진 2> 양주시

<사진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폭염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주민 보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